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h2 style="color: red;">1월 4일(화) 조간 (1.3. 12:00 이후 보도)</h2>	
배 포 일	2021.1.3. / (총 3 매)	담당부서	장애인자립기반과
과 장	신 재 형	전 화	044-202-3320
담 당 자	권 오 경		044-202-3321

장애아동수당, 중증 2만 원, 경증 1만 원 인상

-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-

-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~2만 원 인상되어,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(중증)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,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.
 -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, 약 1만 6,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, 월 7~20만 원에서 9~22만 원으로,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~10만 원에서 3~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,
 -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.

<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(월별)>

구 분	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재가)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)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
장애아동수당	중증	20 → 22만 원	7 → 9만 원	15 → 17만 원
	경증	10 → 11만 원	2 → 3만 원	10 → 11만 원

-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아동수당 안내

붙임

장애아동수당 안내

- 목적 :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
- 법적 근거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

<장애인복지법 제50조>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대상자 :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예산 : 2021년 150억 원 → 2022년 181억 원
- 지원 내용('22년)

구 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재가)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)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
중증장애아동	22만 원	9만 원	17만 원
경증장애아동	11만 원	3만 원	11만 원

- 신청 및 지급 절차
 -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을 통해 신청(상시 접수)
 - 시·군·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